

[별표 3] 제4조제4항에 따른 표준해약환급금 예시

<예시1>

- 소비자 A는 총 계약대금 360만원인 선불식 여행상품 계약을 체결하여 월 3만원씩 120개월 동안 납부하기로 함
 - 관리비 5%, 모집수당 10%
- 소비자 A는 120개월 완납 후, 2개월 뒤 예정된 국외여행 상품을 확정함
- 소비자 A는 출발 1개월 전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함

-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위약금(관리비, 모집수당)을 제외하고 소비자에게 환급
 - $\text{해약환급금(1)}(\text{총 } 306\text{만원}) = 360\text{만원}(\text{납입금 누계}) - 18\text{만원}(\text{관리비 누계}) - 36\text{만원}(\text{모집수당 공제액})$
- 또한 소비자가 재화등의 제공시기를 확정된 후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,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(국외여행)을 적용하여 산정
 -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(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-25호)」(국외여행)상 1개월 전 취소시 여행금액(360만원) 전액 환급이므로 사업자에 대한 위약금은 0원
- 최종 해약환급금(306만원, 85%) = 해약환급금(1)(306만원) - 재화등 제공시기 확정 후 위약금(0원)

<예시2>

- 소비자 A는 총 계약대금 360만원인 선불식 여행상품 계약을 체결하여 월 3만원씩 120개월 동안 납부하기로 함
 - 관리비 5%, 모집수당 10%
- 소비자 A는 120개월 완납 후, 2개월 뒤 예정된 국외여행 상품을 확정함
- 소비자 A는 출발 9일 전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함

-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위약금(관리비, 모집수당)을 제외하고 소비자에게 환급
 - $\text{해약환급금(1)}(\text{총 } 306\text{만원}) = 360\text{만원}(\text{납입금 누계}) - 18\text{만원}(\text{관리비 누계}) - 36\text{만원}(\text{모집수당 공제액})$
- 또한 소비자가 재화등의 제공시기를 확정된 후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,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(국외여행)을 적용하여 산정
 -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(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-25호)」(국외여행)상 9일 전 취소시 여행금액(360만원) 80% 환급(20% 배상)이므로 사업자에 대한 위약금은 72만원(360만

원×20%)

- 최종 해약환급금(234만원, 65%) = 해약환급금(1)(306만원) - 재화등 제공시기 확정 후 위약금(72만원)

<예시3>

- | |
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소비자 A는 총 계약대금 360만원인 선불식 여행상품 계약을 체결하여 월 3만원씩 120개월 동안 납부하기로 함• 관리비 5%, 모집수당 10%○ 소비자 A는 10개월 납입 후, 2개월 뒤 예정된 국외여행 상품을 확정함○ 소비자 A는 출발 1개월 전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함 |
|--|
-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위약금(관리비, 모집수당)을 제외하고 소비자에게 환급
 - 해약환급금(1)(총 7,500원) = 30만원(납입금 누계) - 1.5만원(관리비 누계) - 27.75만원(모집수당 공제액)
 - 또한 소비자가 재화등의 제공시기를 확정된 후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,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(국외여행)을 적용하여 산정
 -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(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-25호)」(국외여행)상 1개월 전 취소 시 여행금액(360만원) 전액 환급이므로 사업자에 대한 위약금은 0원
 - 최종 해약환급금(7,500원, 2.5%) = 해약환급금(1)(7,500원) - 재화등 제공시기 확정 후 위약금(0원)